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0
----------	-----

제출년월일 : 2001.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2001년 마지막 구조조정에 따른 유사·중복·기능 쇠퇴 분야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기구 명칭 부여에 관한 명확한 개념 도입을 위한 명칭 변경
  - 기획조정실 ⇒ 기획관리실
  - 문화진흥국 ⇒ 문화관광국
  - 자치행정과 ⇒ 행정과
  - 재무과 ⇒ 세무회계과
- 기구의 신설 및 폐지
  - 신설 : 3 개과 및 1개 사업소(침단산업과, 교통과, 도로과, 건설종합본부)
  - 폐지 : 5 개과 2개 사업소
    - 도 : 정책연구담당관실, 자원관리과, 교통도로과,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중평 : 기획실, 도시과
- 한시기구·정원의 폐지 : 개발사업소, 민주화보상, 지방이양 정원 등
- 다른 조례의 개정 : 기구의 명칭변경 사항 및 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외 27건)

##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실업대책 및 지역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5. 지역산업의 진흥·개발·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산업 및 생물건강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11.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2. 공업화 시책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동조 각호외의 부분

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4장제1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제35조 내지 제38조)을 각각 삭제하고, 제4장에 제1절(제32조 내지 제3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이하 “건설종합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건설종합본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3조(본부장) 건설종합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건설종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책사업관련 도 추진사업 기획 및 시행
2. 오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5.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6.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7.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8.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9.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10. 중장비 운영 및 대여관리
11.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자재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12. 하천시설공사 및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제35조(지소) 건설종합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제3절 내지 제7절을 각각 제2절 내지 제6절로 하고, 동장 제39조 내지 제54조를 각각 제36조 내지 제51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②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⑤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⑫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⑬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408호 부칙 제3항, 동조례 제2614호 부칙 제2조 및 동조례 제2629호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⑭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개발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분야별란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자원관리과”를 “기업지원과”로 하고, 동표 분야별 및 일련번호란중 “교통도로과 1 내지 12”를 각각 “교통과 1 내지 12”로, “교통도로과 13 내지 17”을 각각 “도로과 1 내지 5”로 한다.

별표 4의 총무과의 제5호란중 “소내”를 “본부내”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고, 동표 제6호란을 삭제하며, 동표 일련번호란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⑮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날로부터”를 각각 “날부터”로 한다.

별표의 기업지원과란중 제4호 및 제5호를 경제과란의 다음에 첨단사업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표 국제통상과란의 일련번호란중 “2”를 “4”로 하고, 동표 기업지원과란의 일련번호란중 “3”을 “5”로 한다.

⑯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⑰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유통정책담당사무관”을 “유통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⑱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⑲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㉑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㉒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㉓ 충청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㉔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㉕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영개발사업단장”을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㉖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9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㉗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㉗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로, “사업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사업소장”을 각각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전단·단서,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중 “사업소”를 각각 “건설본부”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한다.

㉘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실·과”를 각각 “과”로 한다.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	.....	..... ..... <u>기획관리실</u> , ..... ..... <u>문화관광국</u> , .....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	.....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	.....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통진흥 소비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4. 실업대책 및 지역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산업의 진흥·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원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산업 및 생물건강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7.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9. 공업화 시책 추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원에 관한 사항		
		11.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2. 공업화 시책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진흥국) 문화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	.....

현행	개정안
제4장 사업소	
제1절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삭 제)
<p>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이하 “개발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개발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삭 제)
<p>제33조(소장) 개발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삭 제)
<p>제34조(소관사무) 개발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책사업관련 도 추진사업 기획 및 시행</li> <li>2. 오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li> <li>3. 산업단지 조성사업</li> <li>4.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li> </ol>	(삭 제)
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삭 제)
<p>제3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삭 제)

현행	개정안
제36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삭제)
제37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삭제)
제38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4장 사 업 소 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신설)	제2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이하 "건설종합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건설종합본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본부장) 건설종합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p>제44조(소관사무) 건설종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책사업관련 도 추진사업 기획 및 시행</li> <li>2. 오송산단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li> <li>3. 산업단지 조성사업</li> <li>4.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li> <li>5.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li> <li>6.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li> <li>7.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li> <li>8.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li> <li>9.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li> <li>10. 중장비 운영 및 대여관리</li> <li>11.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자재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li> <li>12. 하천시설공사 및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li> </ol>
<p>(신설)</p> <p>제3절 내지 제7절 (생략)</p> <p>제39조 내지 제54조 (생략)</p>	<p>제35조(지소) 건설종합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절 내지 제6절 (현행과 같음)</p> <p>제36조 내지 제51조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をも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